투자설명서

인도네시아 포커스 주식투자신탁

이 투자설명서는 인도네시아 포커스 주식투자신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포커스주식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인수청약을 하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투 자 신 탁 명 : 인도네시아 포커스 주식투자신탁

2. 투자신탁의 종류 : 증권간접투자기구, 추가형, 주식형, 종류형, 해외투자형

3. 자산운용회사명 : NH-CA자산운용주식회사
주소 및 전화번호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7 (☎02-368-3600)

4. 판 매 회 사 명 : NH투자증권 등
주소 및 전화번호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7 농협문화복지재단빌딩 (☎ 2004-4114)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업무 만을 영위할 뿐 투자신탁의 운용과는 무관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장하거나 보전하지는 않습니다.

5. 작 성 기 준 일 : 2008년 12월 24일

6. 투자설명서 비치 및 공시장소 : 판매회사 본·지점 및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금융위원회는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을 승인하거나 투자설명서 내용의 정확성 및 적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또한 투자신탁 수익증권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H-CA자산운용
NH-CA ASSET MANAGEMENT
A Joint Venture with CRÉDIT AGRICOLE ASSET MANAGEMENT

목 차

[투자설명서 요약]

제 1 부. 투자신탁의 기본정보

Ⅰ. 투자신탁의 개요
1. 명칭
2. 신탁계약기간
3. 분류
4. 자산운용회사
5. 최초설정일 등 연혁
6. 수탁고 추이
7. 해지사유

Ⅱ. 투자정보
1. 투자목적
2. 주요투자전략
3. 주요투자위험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유형
5.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6. 운용전문인력
7. 투자실적
가. 연도별 수익률 추이
나. 연평균 수익률

Ⅲ. 수수료•보수, 과세
1.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2.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3.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Ⅳ. 수익증권의 매입 • 환매, 분배
1. 매입
2. 환매
3. 이익 등의 분배

제 2 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

Ⅰ.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등
1. 투자전략
2. 투자위험
3. 투자대상
4. 투자제한

Ⅱ. 자산의 평가

Ⅲ. 투자증권, 장내파생상품 거래시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Ⅳ. 매입 • 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1. 매입관련 유의사항
2. 환매관련 유의사항
3. 분배관련 유의사항

제 3 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

Ⅰ. 자산운용회사
1. 회사의 개요
2. 주요 업무
3. 최근 2 개 사업년도의 요약 재무내용
4. 운용자산 규모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Ⅱ. 판매회사
1. 회사의 개요
2. 주요 업무

Ⅲ. 수탁회사
1. 회사의 개요
2. 주요 업무

Ⅳ.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2. 주요 업무

Ⅴ.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2. 주요 업무

제 4 부. 수익자의 권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

Ⅰ. 수익자의 권리
1. 수익자총회 및 의결권
2.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사항
3. 장부 • 서류의 열람 및 등 • 초본 교부청구권
4. 손해배상책임
5. 재판관할
6. 기타 수익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Ⅱ. 공시
1. 정기공시 및 보고서
2. 수시공시

NH-CA자산운용
A Joint Venture with CRÉDIT AGRICOLE ASSET MANAGEMENT

핵심설명서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해 상품의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한 것입니다. 상품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신 다음에 계약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요약 (핵심설명서)

Ⅰ 투자신탁의 개요 (☞본문 4쪽)

1. **명 칭 :** **인도네시아 포커스 주식투자신탁** (자산운용협회 펀드코드 : Class A: 77773, C: 77497, Ce: 78232)
2. **신탁계약기간 :**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투자신탁의 해지일까지**
3. **분 류 :** 증권투자신탁, 주식형, 추가형, 개방형, 종류형, 해외투자형
4. **자산운용회사 :** NH-CA 자산운용주식회사
5. **해외위탁운용사 :** Credit Agricole Asset Management, Singapore (크레딧 아그리콜 에셋매니지먼트 싱가포르)

Ⅱ 투자정보 (☞본문 4~5쪽)

구분	주요내용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을 주로 "인도네시아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투자신탁으로서 관련주식의 가치상승에 따른 자본이득의 획득추구를 목적으로 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인도네시아 주식' : 인도네시아의 기업에서 발행한 주식 및 인도네시아에 상장된 기업에서 발행한 주식으로서 인도네시아 주식시장 외의 해외에서 거래되는 주식을 포함합니다.
2. 주요 투자전략	• 주요 이머징 마켓의 하나인 인도네시아의 주식에 적극적 기업분석을 통한 투자종목 선정으로 장기적으로 시장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MSCI EM INDONESIA Index를 Benchmark로 하여 운용됩니다. • 효율적 헤지수단의 미비로 환헤지 전략을 수행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다만, 시장상황에 따라 외화표시자산에 대하여 헤지를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 아시아 지역 투자에 오랜 경험을 가진 크레딧 아그리콜 에셋 매니지먼트 싱가포르(CAAM Singapore)사를 해외위탁운용사로 선정하여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3. 주요 투자위험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주식의 가격변동 및 환율변동 등에 따라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을 주로 국내외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투자신탁으로 투자위험 5등급 중 1등급에 해당하는 매우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투자에 따른 높은 가격변동위험과 해외투자에 따른 환율 변동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장기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5. 기준가격	• 수익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투자신탁의 순자산 가치를 발행 수익증권 총수로 나누어 매일 산출합니다. • 판매회사 영업점 또는 자산운용회사 인터넷 홈페이지(www.nh-ca.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운용전문인력

성명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펀드수	운용자산규모	
Reginald Tan	Director and Head of Research	10	USD 1607.5million	운용경력 17년 • 2003~: CAAM Singapore Director • 2000~2003: CAAM Singapore Senior Fundmanager • 1995 ~ CMG First State Investment Ltd.

※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CAAM Singapore의 펀드매니저 Reginald Tan이 운용.

7. **투자실적 추이(연평균 수익률) :** **과거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단위 : %]

	최근1년			설정일이후		
	Class A	Class C	Class Ce	Class A	Class C	Class Ce
	07.12.25 ~08.12.24			07.12.31 ~08.12.24	07.12.24 ~08.12.24	08.01.11 ~08.12.24
투자신탁		-44.16		-43.57	-44.16	-46.45
비교지수*		45.16		-45.73	-45.15	-49.43

* 비교지수: MSCI EM INDONESIA Index 90% + Call Rate 10%

Ⅲ 매입 ▪ 환매 관련 정보 (☞본문 6~7쪽)

1. 수수료 및 보수

구 분			지급비율 (연간, %)		
종류			Class A	Class C	Class Ce
수익증권 판매기준			제한없음	제한없음	인터넷 전용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선취판매수수료[1]		납입금액의 1%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환매수수료[1]		90일미만 이익금의 70%	90일미만 이익금의 70%	90일미만 이익금의 70%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순자산총액 기준)	보수	자산운용회사	연 0.843%	연 0.843%	연 0.843%
		판매회사	연 0.8%	연 1.9%	연 1.6%
		수탁회사	연 0.06%	연 0.06%	연 0.06%
		일반사무관리	연 0.017%	연 0.017%	연 0.017%
		보수합계	**연 1.72%**	**연 2.82%**	**연2.52%**
	기 타 비 용[2]		연 0.01%수준	연 0.01%수준	연0.01%수준
	총보수/비용비율[2]		연 1.73% 수준	연 2.83%수준	연2.53%수준

주 1) 선취판매수수료는 매입시점에서, 환매수수료는 90 일 미만 환매시 일회적으로 부과 됩니다.
2) 기타비용은 유사한 펀드의 비용을 고려한 추정치이며, 총보수·비용비율은 투자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전체적인 보수·비용수준을 나타냄

2. 과세

투자자는 투자대상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배당 및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 등(2008. 12. 현재 개인 15.4%, 법인 14.0%)을 부담합니다. 다만, 상장주식(해외주식포함), 벤처기업 주식 또는 출자지분, 국내상장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에서 발생되는 매매, 평가차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매입, 환매절차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의 영업시간(오전 9 시~오후 4 시 30 분) 중에 **매입 또는 환매할 수 있습니다.**

구 분	오후 5 시 이전	오후 5 시 이후
매 입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의 다음 영업일 (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로부터 제 3 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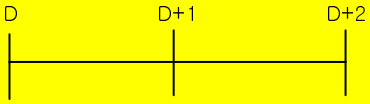
환 매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 4 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 8 영업일(D+7)에 환매대금을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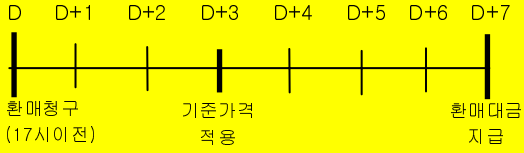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 5 영업일(D+4)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 9 영업일(D+8)에 환매대금을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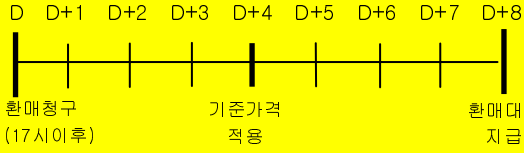

※ 의문사항 또는 불편사항(민원)이 있는 경우 판매회사의 상담센터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거나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요약(핵심설명서)'은 투자설명서의 주요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투자위험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투자설명서 본문을 읽어보셔야 합니다.**

(판매회사)_____(점포명)_____(판매직원 직위 및 성명)_____(은)는

(고객 성명)_____에게 **투자설명서를 교부**하고 그 **주요내용(환율변동 위험 포함)을 설명**하였습니다.

200 . . .

판매직원/취득권유인 _____ 서명 또는 (인)

제1부 투자신탁의 기본정보

Ⅰ. 투자신탁의 개요

1. 명칭

인도네시아 포커스 주식투자신탁 (펀드코드 : Class A: 77773, C: 77497, Ce: 78232)

2. 신탁계약기간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

3. 종류

증권간접투자기구, 주식형, 추가형, 개방형, 종류형, 해외투자형

Class A : 가입제한 없음; 선취판매수수료 부과

Class C : 가입제한 없음; 선취판매수수료 없음

Class Ce : 인터넷 전용; 선취판매수수료 없음

4. 자산운용회사

NH-CA자산운용주식회사 (☎02-368-3600)

※ 해외위탁운용회사 : 크레디 아그리콜어셋매니지먼트 싱가포르(Credit Agricole Asset Management Singapore)

5. 최초설정일 등 연혁

2007. 12. 24.

6. 수탁고 추이

[단위:억원, %]

연 도	Class A			Class C			Class C		
	현재	6개월전	1년전	현재	6개월전	1년전	현재	6개월전	1년전
	08.12.24	08.06.24	07.12.24	08.12.24	08.06.24	07.12.24	08.12.24	08.06.24	07.12.24
수탁고	14	26		1.49	2.75	0.04	1.89	5.18	
증가율*	-45.74			-45.75	6,762.33		-63.46		

* 6개월 전 수탁고 대비 증가율

7. 해지사유

자산운용회사는 공익 또는 수익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지 않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②1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0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③투자신탁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

Ⅱ. 투자정보

1. 투자목적

-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을 주로 "인도네시아의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투자신탁으로서 관련주식의 가치상승에 따른 자본이득 획득추구를 목적으로 운용합니다.
- 투자자는 국내외 주식 등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국내외 주식 등은 다양한 경제변수 등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자산운용회사, 판매회사, 수탁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자에 대한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형 투자신탁으로서 서로 다른 기준가격의 수종의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2. 주요투자전략

- 주요 이머징마켓의 하나인 인도네시아의 주식에 적극적 기업분석을 통한 투자종목 선정으로 장기적으로 시장대비 초과수익 확보를 목표로 운용합니다.
- 세계적인 운용사인 크레딧 아그리콜 싱가포르 (Credit Agricole Asset Management Singapore)을 해외위탁운용사로 하여 글로벌 리서치 및 해외투자 네트워크를 강화하였습니다.
- 효율적 헤지수단의 미비로 환헤지 전략을 수행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다만, 시장상황에 따라 외화표시자산에 대하여 헤지를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은 MSCI EM INDONESIA Index를 Benchmark로 하여 운용됩니다.

※ '인도네시아 주식' : 인도네시아의 기업에서 발행한 주식 및 인도네시아에 상장된 기업에서 발행한 주식으로서 인도네시아 주식시장 외의 해외에서 거래되는 주식을 포함합니다.

- 환율 변동에 따라 투자자는 다음의 사례와 같이 추가 손실 또는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례 1] 투자자 A씨는 현금 100,000원을 1$ = 1000원의 환율로 환전, $100를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에 투자함. 1년뒤 환율이 떨어져 1 $=900원이 된 경우 수익률이 10% 발생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환율 하락으로 인해 오히려 원금이 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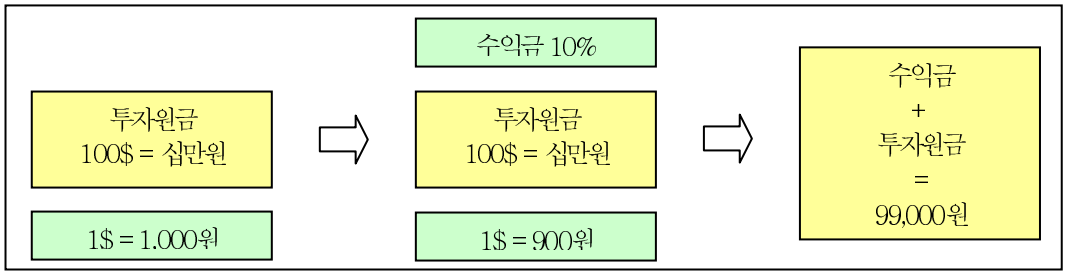

[사례 2] 투자자 A씨는 현금 100,000원을 1$ = 1,000원의 환율로 환전, $100를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에 투자함. 1년뒤 환율이 상승하여 1$=1,100원이 된 경우 수익률이 10% 발생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환율상승으로 추가적인 수익을 얻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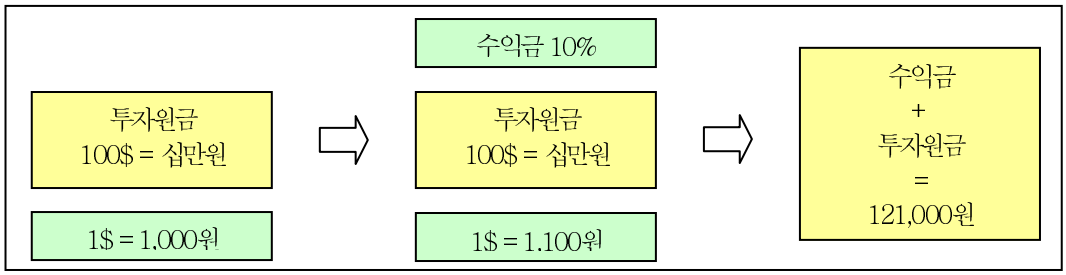

상기의 예는 환헷지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의 예이며, 이 투자신탁 환헷지를 수행할 경우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사례1)과 같은 추가적 손실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기도 하지만 (사례2)와 같은 추가적인 이익기회가 상실될 수도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운용효율상 기본적으로 환율변동위험제거를 위한 환헤지 전략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 상기의 투자전략은 시장상황 및 운용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의 투자전략은 이 투자신탁의 기본적인 운용목적의 달성을 위해 수행되나 목적달성의 유효성에 대한 보장은 하지 않습니다.

3. 주요 투자위험

- 이 투자신탁의 신탁재산은 시장위험, 개별종목위험, 유동성위험, 파생상품투자에 따른 위험, 외화표시자산 투자에 따른 환율변동위험 등에 노출됩니다.
-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므로 투자대상 주식의 가격 하락에 따른 위험, 국내외 거시경제지표 변화에 따른 시장위험과 동시에 외화표시자산(외국주식 등)투자에 따른 환율변동위험 등을 동시에 수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본문에서 제시된 위험 이외의 예상치 못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은행 등을 통해 수익증권을 매입한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상세 투자위험에 대해서는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 I.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의 "2. 투자위험" 부분의 내용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국내외(이머징 마켓 포함) 주식 등에 투자하는 주식형 투자신탁으로서 주식투자에 따른 가격변동위험과 외화표시자산(외국주식 등) 투자에 따른 환율변동위험에 동시에 노출되는 특성을 지닙니다. 이러한 특성을 감안할 경우 위험수준을 기준으로 한 상품분류상 5등급중 1등급에 해당되는 매우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준의 위험은 이 펀드보다 주식편입비중이 낮은 혼합형 투자신탁이나 채권형 투자신탁, MMF투자신탁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이 투자신탁의 높은 위험을 감안하여 투자비중은 투자자의 전체 투자 포트폴리오 중 일부분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매우 높은 수준의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투자자 유형별 펀드위험등급

등급	위험등급	투자자 유형	
1	매우높은 위험	고수익추구형	성장형 투자전략을 추구하고 매우 높은 시장 변동을 감수할 수 있는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함.

2	높은 위험	수익추구형	투자자금의 대부분을 주식에 투자하면서 비교적 높은 수익을 추구하지만 자금의 일부분을 채권에 투자하여 어느정도 안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성향의 투자자에게 적합함.
3	중간위험	위험중립형	투자자금의 대부분을 채권등의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하고 일정부분 주식에 투자하여 주가상승에 따라 이익을 추구하는 상품으로서 위험중립형 성향의 투자자에게 적합함
4	낮은위험	위험회피형	투자자금의 대부분을 채권등의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하는 하는 상품으로서 안정적인 성향의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함
5	매우낮은위험	안정지향형	단기 여유자금을 안정적인 수익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함.

※ 위에 제시된 투자위험 수준은 이 투자신탁의 일반적 상황하에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측된 것이며, 실제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위에서 제시된 위험수준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NH-CA자산운용사의 운용 중인 투자신탁 상품(예시)]

1등급	차이나 포르테 주식투자신탁
2등급	농협CA 종자돈 적립 고배당 혼합1
3등급	농협CA 혼합 30-1호
4등급	농협CA 중기채권 시리즈
5등급	농협CA 개인신종 MMF1호

.

5.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분	내용
산정방법	공고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공고일 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합니다)을 공고일 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산정주기	매일 산정합니다.
공시시기	산정일의 다음 영업일의 영업개시 전에 공고 및 게시합니다.
공시방법 및 장소	판매회사 영업점포, 홈페이지 및 자산운용회사의 홈페이지, 자산운용협회 등에게시 및 단말기로 조회

※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투자신탁이므로 설정시기,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로 인하여 종류별 기준가격은 서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6. 운용전문인력

성명	출생년도	학력	주요경력
필립페르슈롱	1962	파리제2 대학 재무전공 석사	자산운용 18 년
김영준	1961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석사	자산운용 15 년, 조사분석 5 년

* 신탁재산운용은 팀제로 운용하며, 자산운용회사의 사정에 따라 예고 없이 펀드매니저가 교체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해 자산운용회사 또는 자산운용협회에서 추가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해외위탁운용사 (크레디아그리콜 에셋매니지먼트, 싱가포르) 2008.11 기준

성명	학력	주요경력
Reginald Tan	BSc in Economics, from the Wharton School at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운용경력 17년 • 2003~: CAAM Singapore Director • 2000~2003: CAAM Singapore Senior Fundmanager • 1995 ~ CMG First State Investment Ltd.

7. 투자실적

가. 연도별 수익률 추이

[단위:%]

기 간	최근1년차(07.12.25 ~08.12.24)		
	Class A	Class C	Class Ce
투자신탁 1)	-43.57	-44.16	-43.59
비교지수 2)	-45.16		

주1)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음.

주2) 비교지수 : MSCI EM INDONESIA Index 90% + Call Rate 10%

나. 연평균 수익률

[단위:%]

	최근1년			설정일이후		
	Class A	Class C	Class Ce	Class A	Class C	Class Ce
	07.12.25 ~08.12.24			07.12.31 ~08.12.24	07.12.24 ~08.12.24	08.01.11 ~08.12.24
투자신탁		-44.16		-43.57	-44.16	-46.45
비교지수*		45.16		-45.73	-45.15	-49.43

* 비교지수: MSCI EM INDONESIA Index 90% + Call Rate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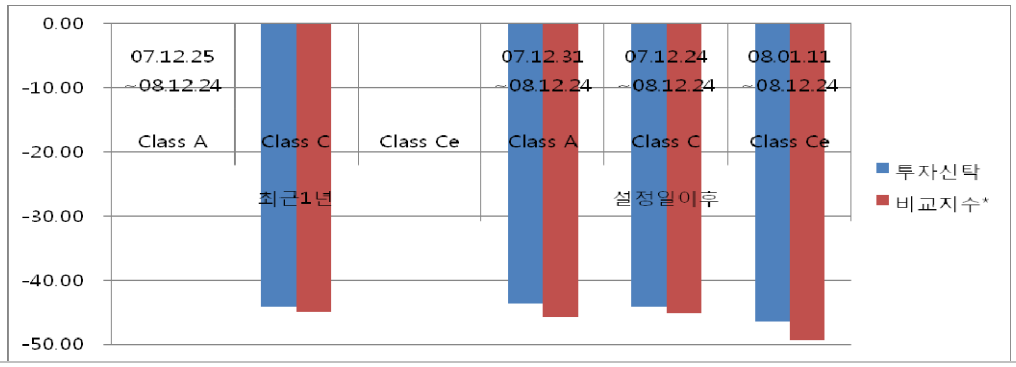

Ⅲ. 수수료 · 보수, 과세

1.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 분	지급비율 (연간, %)		
종류	Class A	Class C	Class Ce
수익증권 판매기준	제한없음	제한없음	인터넷 전용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1%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환매수수료	90일미만 이익금의 70%	90일미만 이익금의 70%	90일미만 이익금의 70%

※ 선취판매수수료는 매입시점에서, 환매수수료는 90일미만 환매시 일회적으로 부과됩니다.

2.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 분		지급비율 (연간, %)		
종류		Class A	Class C	Class Ce
수익증권 판매기준		제한없음	제한없음	인터넷 전용
보수	자산운용회사	연 0.843%	연 0.843%	연 0.843%
	판매회사	연 0.8%	연 1.9%	연 1.6%
	수탁회사	연 0.06%	연 0.06%	연 0.06%
	일반사무관리	연 0.017%	연 0.017%	연 0.017%
	보수합계	**연 1.72%**	**연 2.82%**	**연 2.52%**
기 타 비 용		연 0.01%수준	연 0.01%수준	연0.01%수준
총보수/비용비율		연 1.73% 수준	연 2.83%수준	연2.53%수준

* 기타비용은 선물옵션 매매거래 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서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 또는 이 투자신탁과 유사한 상품의 추정치입니다.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비용"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합니다.

<전체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는 비용>

1. 투자증권의 매매수수료 2. 투자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5.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7. 투자증권등의 가격정보비용 8.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 재산권비용 9. 해외보관대리인 관련비용
10.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자에게 통보, 통지,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
11.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등에 소요되는 비용

<특정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는 비용>

1.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연간 수수료 부담 예

[가정] 수익자가 1,000만원을 투자하는 경우 (단위 : 원)

투자기간	1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1) Class A	275,552	653,427	1,070,034	2,308,071
2) Class C	290,075	914,461	1,602,847	3,648,532
3) Class Ce	259,325	817,522	1,432,934	3,261,762

주)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취판매수수료 또는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신탁보수는 신탁재산의 순자산가치(NAV)변동에 따라 다소 유동적입니다.

3. 투자소득에대한 과세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투자신탁에서 납부한 이자,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다시 환급받게 되므로 투자신탁에서는 투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수익자는 투자신탁이 투자한 투자대상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 및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 등(2008. 12월 말 현재 개인 15.4%, 법인 14.0%)을 부담합니다. 다만, 상장주식(해외주식포함), 벤처기업 주식 또는 출자지분, 국내상장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에서 발생되는 매매·평가차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기타 유의 사항

: 해외주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2007년 6월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외국법인 등이 발행하여 **국외상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매매·평가손익**을 대상으로 하며, mutual fund, REITs, ETF 및 이와 유사한 성격의 paper company(해당 국가 법인세 부담이 없는 회사)의 주식 등은 제외됩니다. 또한 국내 간접투자기구를 통하여 **해외주식을 간접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도 양도차익 비과세 혜택이** 부여됩니다. 다만 펀드전체 소득이 아닌 국외상장주식에 대한 매매·평가손익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적용되고 국외상장주식의 배당금 및 다른 투자대상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펀드 전체적으로 손실이 발생하여도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세율은 정부정책의 변경 등에 따라 향후 변동 될 수 있습니다.

IV. 수익증권의 매입·환매, 분배

1. 매입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입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투자자금, 신분증, 도장(개인일 경우 서명도 가능)을 지참한 후 판매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여 수익증권 매수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매입시 기준가격]

수익증권 취득을 위해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시간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매입가격이 결정됩니다.

(1) 17시 (오후5시) 이전 : 자금 납입일의 익영업일(제2영업일)에 공시되는 기준가격

(2) 17시 (오후5시) 이후 : 자금 납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시되는 기준가격

(3) 최초 설정일의 판매가격은 1,000좌당 1,000원

- 영업일은 판매회사의 영업일(단,토요일 제외)를 기준으로 합니다.

-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시간"이라 함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17시 이전 자금 납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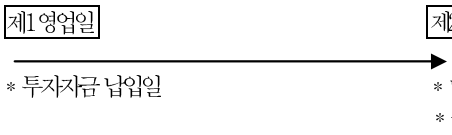

※17시 이후 자금 납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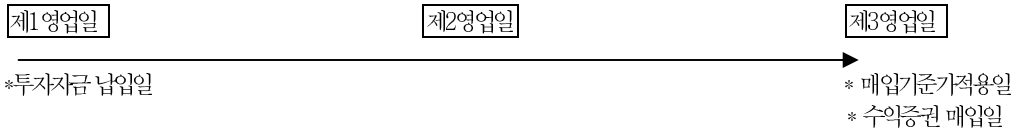

※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관련 추가적인 유의사항은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IV. 매입 • 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중 '1. 매입관련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환매

수익자는 언제든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환매방법]

구 분	환매청구방법
수익증권을 판매사에서 매입한 경우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영업점에 환매청구
판매사가 해산/허가취소/업무정지 등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로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자산운용회사에 직접 환매청구
자산운용회사의 해산 등으로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수탁회사에 환매청구
실질 수익자인 경우	판매회사를 통해 증권예탁원에 환매청구
현물보유 수익자인 경우	수익증권에 기재된 판매사를 경유하여 자산운용회사에 수익증권을 제출

[환매시 기준가격]

(1) 오후 5시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4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8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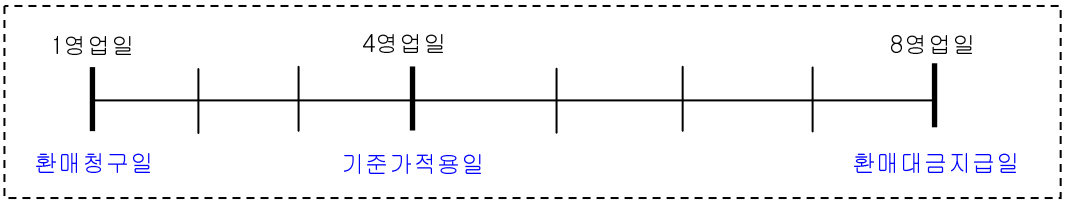

(2) 오후 5시 경과 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5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9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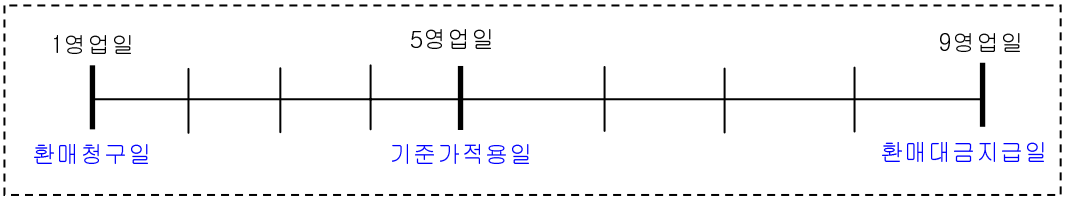

(3) 환매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나, 투자신탁 수익자의 전원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시점이라 함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환매연기]

법과 신탁약관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탁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매제한]	자산운용회사는 다음의 경우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제6영업일 전일(오후5시 경과후 환매청구하는 경우에는 제7영업일 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환매수수료]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관련 추가적인 유의사항은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Ⅳ. 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중 '2. 환매관련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입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간접투자증권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는 판매회사 영업점의 영업시간 중에 가능합니다.
3. 이익등의 분배	
[이익분배]	- 자산운용회사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당해 종류 수익증권 별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의 익영업일에 분배합니다. - 자산운용회사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간접투자증권으로 분배할 수 있습니다.
[이익분배금에 의한 수익증권 매수]	- 수익자는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매수 할 수 있습니다. - 이익분배금으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종류별 및 수익자 별 매수 수익증권의 합계수량을 자산운용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운용회사는 당해 수익증권 매수금액의 납입이 완료 된 때에 제 14 조제 1 항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해야 합니다.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등의 시효 등]	-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제43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수탁회사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 분배관련 추가적인 유의사항은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Ⅳ. 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중 '3. 분배관련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 정보

Ⅰ.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등

1. 투자 전략

- 주요 이머징마켓의 하나인 인도네시아의 주식에 적극적 기업분석을 통한 투자종목 선정으로 장기적으로 시장대비 초과수익 확보를 목표로 운용합니다.
- 세계적인 운용사인 크레딧 아그리콜 싱가포르 (Credit Agricole Asset Management Singapore)을 해외위탁운용사로 하여 글로벌 리서치 및 해외투자 네트워크를 강화하였습니다.
- 효율적 헤지수단의 미비로 환헤지 전략을 수행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다만 시장상황에 따라 외화표시자산에 대하여 헤지를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은 MSCI EM INDONESIA Index를 Benchmark로 하여 운용됩니다.

• 안정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인도네시아 주식시장에 투자합니다.

※'인도네시아주식' : 인도네시아의 기업에서 발행한 주식 및 인도네시아에 상장된 기업에서 발행한 주식으로서 인도네시아 주식시장 외의 해외에서 거래되는 주식을 포함합니다.

1. 자원 부국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의 최대 수혜국 중 하나인 인도네시아 시장에 집중투자
2. 동남아시아 중 유일한 OPEC 회원국으로 풍부한 천연자원 및 인적 자원 보유
3. 세계 4대 인구를 바탕으로 소비 및 투자확대로 경제성장을 지속
4. 최근 정책금리인하를 통한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안정적인 상승추세 시현
5.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확대와 수출장려 정책
6. 외국인 투자확대를 통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체계적으로 추진

• 적극적 기업분석을 통한 투자종목선정으로 시장대비 초과수익 확보를 목표로 운용합니다.

- 철저한 Bottom up approach 를 통한 적극적 운용으로 시장대비 초과수익 확보를 추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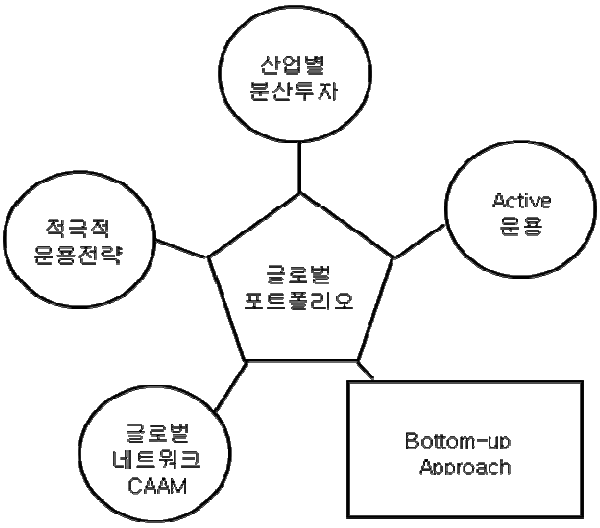

[유의사항]

상기의 투자전략은 시장상황 및 운용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의 투자전략은 이 투자신탁의 기본적인 운용목적의 달성을 위해 수행되나 목적달성의 유효성에 대한 보장은 하지 않습니다.

2. 투자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 손실위험	관련법령은 수익증권 투자에 대해서는 원리금을 보장하거나 보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고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자산운용회사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주식가격 변동위험	당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을 국내외 주식 및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에 투자함으로써 국내외 주식시장 가격변동에 따른 급격한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금리 변동위험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가격 하락에 의한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외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장위험	신탁재산을 국내외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함으로써 구간의 금융시장의 주가, 이자율 및 투자대상 국가 및 투자대상 업종의 환경 변화 등 기타 국제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파생상품 거래상대방 위험	국내외 주식, 채권 및 외환관련 파생상품 거래 등에 있어서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에 따라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채무 불이행 위험이 커짐으로 인해 신탁재산의 급격한 가치 하락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유동성 위험	유가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국내외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레버리지효과(지렛대 효과)로 인하여 파생상품 그 자체에 투자되는 금액보다도 상당히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환율 변동위험	당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을 외화표시자산(외국주식 등)에 투자하므로 국내통화와 투자대상국통화와의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되며 이는 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운영위험	해외 투자의 경우 국내 투자와 달리 운영위험에 노출 되어 있습니다. 시장의 개장과 폐장 시간의 차이로 인해 신탁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시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평가를 위한 환율의 적용에 있어서 제반 규정에 따라 상이한 참조 환율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제 사무의 처리의 복잡성, 현금 운용의 복잡성 등 해외 투자의 경우 일반 운영위험은 일반 국내 투자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기타위험	신탁재산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 경제상황 및 정부의 조치, 세제의 변경등에 따라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신탁약관에 따라 일정한 경우 환매연기나 일정기간 환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 상품으로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당해 투자신탁 수익증권은 예금과 달리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이 상품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자산운용회사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3.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한도	주요내용
1.국내주식 및 외국주식	60% 이상	-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합니다.) 및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예탁증서(이하 "주식"이라 한다) - 외국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로서 제1호의 성질을 구비한 것 (이하 "외국주식"이라 합니다..)
2.국내채권 및 해외채권	40$ 이하	-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7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합니다.) (이하 "채권"이라 합니다.) - 외국정부 또는 외국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이나 증서 또는 법제 2 조제 7 호다목의 외화증권으로서 제 3 호의 성질을 구비한 것(이하 "외국채권"이라 합니다.) 단 제 3 호에 적용되는 신용평가등급 요건은 적용되지 아니하나, 사채권의 경우 2 이상(신용평가기관의 업무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 이상)의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BBB-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3. 어음 및 외국어음	40% 이하	- 법시행령 제 6 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매출 또는 중개한 어음·채무증서 또는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어음(이하 "어음"이라 합니다.) - 외국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로서 제5호의 성질을 구비한 것(이하 "외국어음"이라 합니다..)
4. 자산유동화증권 및 외국자산 유동화증권	40% 이하	-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이하 "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합니다.) - 외국정부 또는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로서 제7호의 성질을 구비한 것(이하 "외국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합니다.)
5.금리스왑거래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 이하로 합니다.	
6. 간접투자증권 및 외국간접투자증권	투자증권 5% 이하	- 법에 의하여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및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외국법령에 의하여 발행된 증권으로서 수익증권 또는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질을 갖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하 "간접투자증권" 이라 합니다.) -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 간접투자증권에 대하여는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 가능합니다. - 간접투자증권 자산총액의 100 분의 95 이상이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운용되는 외국간접투자증권 또는 간접투자증권 자산총액의 100 분의 95 이상이 법시행령제 164 조제 1 항제 1 호가목 단서에 따라 위탁하는 방법으로 외국자산에 운용되는 간접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까지 가능합니다.
7. 투자증권의 대여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투자증권총액의 50% 이하로 합니다.	
8.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	- 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해외장내파생상품을 포함.) 및 장외파생상품(해외장외파생상품을 포함). 이 경우 장외파생상품은 법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시장 등의 밖에서 통화 또는 통화의 가격이나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 장내파생상품의 거래는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5% 이하가 되도록 합니다.	
9.환매조건부 채권의 매도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총액의 100분의 50이하로 합니다.	
10. 투자증권 차입	투자증권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합니다.	
11. 고유재산거래	법시행령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회사 고유재산과의 거래를 말합니다.	

- 자산운용회사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1. 단기대출(30 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 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합니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 년 이내인 상품에 한합니다.)
  3. 제1,2 호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의 운용
- 주식 및 외국주식, 채권 외국채권, 자산유동화증권 및 외국자산유동화증권, 어음 및 외국어음, 금리스왑거래의 경우 다음 각호의 1 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 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투자신탁 회계기간이 3 월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투자신탁 계약기간이 3 월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4. 3 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상기 표의 1. [주식 및 외국주식] 내지 5. [금리스왑 거래]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4. 투자제한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내용	적용예외
동일종목투자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시행령 제6조제1호내지 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또는 채무증서, 동조항의 금융기관이 보증한 채권(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발행된 채권에 한한다) 또는 채무증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법시행령 제6조내지 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지급 보증한 것에 한한다) 및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비중(매일의 당해주식의 종가의 총액을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종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월간 평균한 비율을 말한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월간 적용한다.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동일회사 발행주식	동일회사가 발행한 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습니다.	
파생상품투자	- 동일회사가 발행한 투자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거래에 따르는 위험의 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습니다. -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할수 없습니다.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은 간접투자기구의 설정일부터 매 1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그 매 1월(매 1월이 되는 날 전에 간접투자기구가 해지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 까지의 기간을 말한다)의 매일의 위험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을 포함한 투자신탁재산 총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단기대출	자산운용회사의 이해관계인에게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단기대출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한도초과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재산의 일부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위의 단기대출, 파생상품 투자, 동일종목투자의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자산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위의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계열회사발행주식	계열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주식의 시가총액비중의 합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주식가액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후순위채	이 투자신탁은 후순위채권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후순위채권 :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채권	

II. 자산의 평가

1. 자산평가

- 투자신탁재산의 평가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기준일에 거래실적이 없어 공정한 가치의 산정이 곤란한 자산, 시장매각이 제한되거나 매각이 곤란한 자산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간접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주요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 용
상장주식 또는 등록주식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 최종시가
비상장 비등록 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이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이상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함)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비상장채권	(위 상장채권 조건에 해당하지 않은 상장채권 포함)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발행 채무증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간접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상장 또는 등록된 간접투자증권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외화표시 유가증권인 상장주식, 상장채권	그 유가증권을 취득한 국가에 소재하는 유가증권시장의 최종시가 또는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외국간접투자증권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그 외국간접투자증권의 기준가격. 다만, 외국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국간접투자증권은 그 외국간접투자증권이 거래되는 외국의 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등(이하 "유가증권시장등"이라 한다)이 발표하는 가격
장외파생상품	발행사 또는 1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평가가격을 기초로 하여 간접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정한 방법으로 평가

Ⅲ. 투자증권, 장내파생상품 거래시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1. 선정절차 및 기준

1) 거래증권사의 조사분석서비스와 거래체결능력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수행함.

2) 평가 결과에 따라 주요 거래 증권사 목록이 작성되며, 가장 높은 평가를 얻는 그룹에 상대적으로 높은 주문배분을 함.

3) 새로운 중개회사의 지명시 준법위험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함.

-준법위험관리위원회는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등 발생가능한 리스크를 고려하여 승인을 함.

4) 운용부서는 중개회사별 매매배분계획을 세워 이를 준수함.

5) 매 분기말 준법감시인에게 실제 거래배분결과와 새로운 배분계획을 제출함.

Ⅳ. 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1. 매입관련 유의사항 본문 '제1부. 투자신탁의 기본정보'의 'Ⅳ. 수익증권의 매입•환매, 분배' 중 '1. 매입' 의 내용 외 특이사항 없습니다.

2. 환매관련 유의사항 본문 '제1부. 투자신탁의 기본정보'의 'Ⅳ. 수익증권의 매입•환매, 분배' 중 '2. 환매' 의 내용 외 특이사항 없습니다.

3. 분배관련 유의사항 본문 '제1부. 투자신탁의 기본정보'의 'Ⅳ. 수익증권의 매입•환매, 분배' 중 '3. 분배' 의 내용 외 특이사항 없습니다.

NH-CA자산운용
A Joint Venture with CRÉDIT AGRICOLE ASSET MANAGEMENT

제3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

I. 자산운용회사

1. 회사의 개요

□ 자산운용회사명 : NH-CA자산운용주식회사

□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7(☎02-368-3600)

□ 회 사 연 혁 :

연도	회사연혁
2002.4.5	농협과 CA-AM 간에 투신운용회사 설립에 관한 MOU 체결
2003.1.28	법인설립 (자본금 300 억, 농협 60%, CAAM 40%)
2003.3.28	금감위로부터 투신업 본허가 취득
2003.4.9	영업개시 및 첫 펀드 설정
2003.8.7	자문업 등록(금융감독원)
2003.10.29	투자일임업 등록
2004.5.14	Asian Investor 로부터 2004 한국의 최우수 운용사로 선정
2005.3.1	Asia Asset Management 로부터 2004 한국 최우수 신상품상 수상
2005.4.7	수탁고 7 조 돌파
2006.9.26	국민연금 SRI 펀드 운용사로 선정

2. 주요업무

▣ 자산운용회사 업무

①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업무를 수행합니다.

②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96조 제1항의 기준가격의 산정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하며, 위탁에 따른 수수료는 동 투자신탁에서 부담합니다.

▣ 자산운용회사의 선관의무 등

①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간접투자재산을 관리 하여야 하며, 간접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②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자의 계산으로 행한 법률행위로부터 발행한 제비용 및 보수를 신탁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간접투자재산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③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는 자신의 채무를 수익자의 명의로 부담하게 하거나 투자신탁재산으로 이를 변제할 수 없습니다.

④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에 대한 채권은 그 자산운용회사의 당해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 자산운용회사의 책임

①자산운용회사가 법령, 투자신탁의 약관 및 법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간접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②자산운용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산운용회사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③자산운용회사는 법 제56조 제1항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이 법령 및 신탁약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수탁회사의 확인을 받아 이를 판매회사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외국통화표시자산에 대한 업무위탁>

자산운용회사는 법제176조와 법시행령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법 제2조제1호 각목의 자산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제 36조 규정에 따른 투자대상의 운용 및 운용지시업무, 조사분석과 법시행령제30조제5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단순매매주문업무 등을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는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 위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습니다.

업무의 위탁에 따른 보수는 자산운용회사와 업무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하며, 이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보수에서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신탁약관 시행일 현재 크레디 아그리콜 에셋 매니지먼트 싱가포르 (CAAM Singapore)입니다.

자산운용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를 변경, 추가 등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크레딧 아그리콜 에셋 매니지먼트(CAAM)사 소개

① 크레딧 아그리콜은 신용도 AA 인 (from Fitch IBCA) 유럽의 중요 은행그룹 중 하나

② 2004 년 자산기준 세계에서 2 번째로 큰 은행 (US$55bn in the July 2004 issue of "The Economist")

③ 크레딧 아그리콜은 크레딧 리요네를 2003 년 6 월 인수합병

④ 1997 년 크레딧 아그리콜 자산운용사는 엥도수에즈 자산운용사를 합병

⑤ 크레딧 아그리콜 에셋 매니지먼트사는 Fitch-AMR 로부터 AA+ 의 신용등급을 부여 받았으며 이는 크레딧 아그리콜의 지역별 자회사에도 적용

⑥ 2004 년 03 월 31 일 기준, 크레딧 아그리콜 자산운용사는 미화 3,470 억불(약 360 조원)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으며 주 투자자는 기관, 각 국가의 중앙은행, 상업은행, 국제기관, 연기금, 기업 등 다양

⑦ 유럽에서 운용 규모 기준 채권 부분 1 위 (Global Fund Analysis, LIPPER)

▣ 크레딧 아그리콜 에셋 매니지먼트싱가폴(CAAM) Singapore 소개

A. 2006년 수탁고 : SGD4,707M (약 3조원)

B. 회사 연혁

설립일	1989년 2월 27일
회사 연혁	- 1997년 9월 18일자로 "엥도수에즈 싱가폴자산운용"에서 "엥도크레디아그리꼴 싱가폴 (Indocar Singapore Limited)"로 변경. - 2001년 5월 21일자로 "엥도크레디아그리꼴자산운용 싱가폴 (Indocam Singapore Limited)"에서 크레디 아그리꼴 에셋 매니지먼트 싱가폴(Crédit Agricole Asset Management Singapore Limited)로 변경

C. 대주주 현황

주요주주	크레디아그리콜자산운용 파리(Credit Agricole Asset Management S.A.(Paris)), 프랑스
보유주식 수 및 비율	1,000,000 (100%)

※ 해외위탁회사가 약관 제 6-1 조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의무를 소홀히 하여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NH-CA 자산운용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최근 2사업연도의 요약재무내용 (단위: 백만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항 목	'07.3말	'08.3말	항 목	'07.3말	'08.3말
유동자산	36,045	40,676	영업수익	11,332	11,332
고정자산	2,011	3,686	영업비용	8,538	10,719
자산총계	38,056	44,362	영업이익	2,794	6,191
유동부채	1,236	2,848	영업외수익	12	499
고정부채	57	123	영업외비용	1	8
부채총계	1,293	2,971	경상이익	2,805	6,682
자본금	30,000	30,000	특별이익	-	-
이익잉여금	6,763	11,391	특별손실	-	34
자본조정	-	-	법인세	851	2,020
자본총계	38,056	41,391	당기순이익	1,954	4,628

4. 운용자산규모 (2008년 12월현재)

[단위 : 억

종류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MMF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재간접	실물자산	총계
수탁고	12,796	8,148	2,538	39,889	11,866	0	0	402	0	75,638

5. 운용전문인력

성명	출생년도	학력	주요경력
필립페르슈롱	1962	파리제2 대학 재무전공 석사	자산운용 19 년
김영준	1961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석사	자산운용 16 년, 조사분석 5 년

※ 신탁재산운용은 팀제로 운용하며, 자산운용회사의 사정에 따라 예고없이 펀드매니저가 교체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해 자산운용회사 또는 자산운용협회에서 추가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해외위탁운용사 (크레디아그리콜 에셋매니지먼트, 싱가포르)

2008.11 기준

펀드매니저	Reginald Tan	
운용 자산규모 (USD, 좌)	총 U$ 1607.5 million	
	펀드명	운용규모
	Segregated Account (i.e. Mandate)	1,420.9 million
	Third-party mutual fund (i.e. NH-CA funds)	69.9 million
	Mutual fund (CAAM funds ASEAN New Markets)	116.7 million
과거 운용경력	회사	경력
	CAAM Singapore	2003 – present: Head of Research
	CAAM Singapore	2000 – 2003: Senior Fund Manager
	CMG First State Investment	1995 – 2000: Fund Manager

II. 판매회사

1. 회사의 개요

판매회사명	대표전화	홈페이지 주소
교보증권	02-3771-9000	http://www.iprovest.com
하이투자증권	1588-7171	http://www.hi-ib.com/
하나대투증권	1588-3111	http://www.hanadaetoo.com/
하나은행	1588-1111	http://www.hanabank.com/
SK 증권	02-3773-8245	http://www.priden.com
NH 투자증권	02-2004-4114	http://www.nhis.com
부산은행	1588-6200	http://www.pusanbank.co.kr/
미래에셋증권	1588-9200	http://securities.miraeasset.co.kr/stock.jsp

2. 주요 업무

- 수익증권 판매업무(수익증권의 모집 및 매출업무)
- 수익증권 환매업무
- 수익증권 교부업무
-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 지급업무
- 각종 장부·서류등의 비치, 수익자 앞 제공 및 공고 업무
- 기타 법령 및 신탁약관에서 규정한 사항

▣ 의무 및 책임

- 신탁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을 해지할 때 판매회사는 투자신탁의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기타 주요 사항을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거나 신탁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합니다.
- 수탁회사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 판매회사는 수탁회사로부터 인도받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 기간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유가증권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탁약관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등이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III. 수탁회사

1. 회사의 개요

회사의 상호	주소	대표전화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서울시 중구 봉래동 1 가 25 번지 HSBC 빌딩 사서함 : 중앙우체국 6910	02-2004-0571

2. 주요 업무

-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간접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 의무 및 책임

- 수탁회사는 투자설명서가 법령 또는 신탁약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또는 기준가격산출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수탁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자산운용회사의 지시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 그 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수탁회사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후 2월 이내에 법 제123조에서 규정한 수탁회사보고서를 수익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수탁회사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 판매회사를 통하여 서면으로 우송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 등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그 방법을 따를 수 있습니다.
-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등이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Ⅳ. 일반사무관리회사

1.회사의 개요

□ 회사명 : 신한아이타스㈜

□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4 (☎02-2168-0400)

□ 연 혁 : - 설립일 : 2000 년 6 월 15 일

- 자본금 : 20.03 억원

2. 주요업무

- 자산의 평가
- 자산운용회사로부터 전달된 운용내역에 의한 간접투자자산의 기준가격 계산업무
- 간접투자자산의 신규계약, 추가납입, 일부인출, 계약해지
- 순자산가치의 산정
- 순자산가치를 자산운용회사, 판매회사 및 자산운용회사가 지정하는 자에 통보
- 회계처리 자료의 제공
- 기타 회계처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업무

▣ 의무 및 책임

-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수탁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수탁한 업무를 소홀히 하여 업무를 위탁한 자산운용회사 또는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합니다)에게도 귀책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Ⅴ. 채권평가회사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KIS채권평가	한국채권평가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7 유화증권빌딩 9층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11번지 광화문빌딩 9층
연락처	02-3770-0400	02-399-3350

설립일	2000. 6. 20.	2000. 5. 29
등록일	2000. 6. 29.	2000. 7. 1.
자본금	30억원	50억원
연혁	2000.6. 키스채권평가(주)설립	2000. 5.국내최초채권평가전문기관으로 설립

2. 주요 업무

간접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에게 제공합니다.

제4부 수익자의 권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

I. 수익자의 권리

1. 수익자 총회 및 의결권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단, 특정종류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습니다.
-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자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의결사항>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서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의결할 수 있습니다.

(1) 투자신탁보수 또는 수수료 인상, 수탁회사 변경, 신탁기간, 투자신탁 종류의 변경 등 신탁약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수익증권 환매의 연기에 관한 사항

(3) 투자신탁의 해지에 관한 사항

(4) 투자신탁의 합병에 관한 사항

<의결권>

- 의결권은 1좌마다 1개로 합니다.
- 수익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수익자총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의결방법>

- 수익자총회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 의안을 결의하게 됩니다.

(1) 발행된 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2)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익자는 자산운용사가 우편 또는 전자메일에 의하여 교부한 서면에 의결권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의 회일 전일까지 자산운용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도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자산운용회사는 자산운용업법 제7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에 관한 서면을 수익자총회 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소집주체 및 통지>

- 수익자총회는 자산운용회사의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역에서 개최되며, 자산운용회사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탁회사 또는 발행된 당해 종류 수익증권총좌수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자산운용회사에 요청하는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자산운용회사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연기수익자총회>

-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의 당해종류 수익증권총좌수가 발행된

당해 종류 수익증권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자총회가 연기된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일 1주 전까지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연기수익자총회에서는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총좌수가 발행된 당해 종류 수익증권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출석한 수익자의 당해 종류수익증권총좌수로써 수익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관하여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2. 잔여재산분배

-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분배금(이하 "상환금등"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수탁회사는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및 투자신탁 해지에 따른 상환금등을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판매회사에게 인도합니다.
- 수탁회사가 상환금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 판매회사는 수탁회사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등을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기간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유가증권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탁약관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가 상환금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판매회사에게 수익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청구권에 관한 사항

- 수익자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대하여 영업시간 내에 당해 수익자에 관련된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장부 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 수익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간접투자재산명세서
  (2) 간접투자증권기준가격대장
  (3)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4) 자산매매거래내역서

4. 손해배상책임

- 자산운용회사가 법령, 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자산운용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합니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등이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5. 재판관할

-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또는 판매회사가 이 투자신탁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6. 기타 수익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의 신탁약관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등은 자산운용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자산운용협회 인터넷(www.amak.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공시

NH-CA자산운용
A Joint Venture with CRÉDIT AGRICOLE ASSET MANAGEMENT

1. 정기공시 및 보고서

금융감독원 인터넷홈페이지 (www.fss.or.kr) 및 자산운용협회 인터넷홈페이지 (www.amak.or.kr)

구 분	공시주기	공시내용
영업보고서	매 분기 종료 후 20 일 이내	1. 일반 현황 2. 세부 현황 3. 기준가격표 4. 주요 영업수익 구성 현황 5. 파생상품 현황 6. 의결권공시사항
결산서류	매결산일로부터 2 월이내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유가증권내역 4. 법제 121 조의 자산운용보고서
감사보고서	매결산일로부터 2 월이내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기준가격계산서 4.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자산운용 보고서 및 수탁회사 보고서 >

구 분	제공 내용	제공 절차
자산운용 보고서	1. 기준일(회계기간개시일로부터 3 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신탁계약기간의 종료일) 현재의 투자신탁의 자산, 부채 및 기준가격 2. 운용경과의 개요 및 운용기간중의 손익상황 3. 기준일 현재 신탁재산의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각각의 비율 4.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매매회전율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3 월에 1 회 이상 간접투자자에게 제공
수탁회사 보고서	1. 신탁약관의 주요 변경사항 2.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3. 수익자총회의 의결내용 4. 법 제132 조제 1 항 각호의 사항 5. 법 제92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경우의 그 내용 6. 회계감사인의 선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수익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후 2 월 이내에 간접투자자에게 제공

2. 수시공시

• 자산운용회사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자산운용회사(www.nh-ca.com) · 판매 회사(맨하단참조) 및 자산운용협회 (www.amak.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자산운용회사 · 판매회사의 본 · 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내역 및 상각률

(4) 수익자총회의 의결내용

(5) 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명령,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6) 자산운용회사의 합병, 분할 또는 영업의 양수도

(7) 자산운용회사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수정하는 경우 그 내용

(8) 그 밖에 자산운용회사의 재무건전성 또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재경부령이 정하는 사항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①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권행사내용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1.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2.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3.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②자산운용회사는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의결권행사여부에 관한 사항 등을 공시하는 때에는 수익자가 당해 의결권행사여부의 적정성 등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다음의 자료를 함께 공시하여야 합니다. 1. 의결권행사와 관련된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의 내부지침 2.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가 의결권행사와 관련하여 간접투자기구별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 3.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와 의결권행사 대상법인의 관계가 시행령 제 79 조제 1 항 또는 제 2 항에서 정하고 있는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 **투자신탁명** : **인도네시아 포커스 주식투자신탁**

☐ 판 매 일 : _____

☐ 투자자 확인 사항

◦ 투자자께서는 투자설명서를 제공받고 그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 아래의 내용을 밑줄 친 곳에 똑같이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시기 바랍니다.

* 인도네시아 포커스 주식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를 **제공 받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 들었음.**

*** 인도네시아 포커스 주식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를)_____(그 주요내용을)_____.**

년 월 일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

NH-CA자산운용
A Joint Venture with CRÉDIT AGRICOLE ASSET MANAGEMENT